

●산업통상부공고 제2026-040호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1월 22일

산업통상부장관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을 위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자 제공되고 있는 수입부과금 환급 적용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되어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이 필요

2. 주요내용

가.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기한을 기존 ' 25년에서 ' 27년으로 2년 연장
(안 제2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,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
- 전자우편 : lje0123@korea.kr
- 팩스 : 044-203-4762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(전화 (044) 203 - 5226, 팩스 044-203-476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